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이 자료집을 함께 제작한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는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고민하기 위해 운영해온 회의체입니다.

참가단체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7개)

발간 | 국회의원 노회찬

구성 |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그림 | 토리(<http://www.toritoon.net>)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2호

전화 : 02-784-1727, 6227 팩스 : 02-788-3712 <http://www.nanjoong.net>

국회의원 노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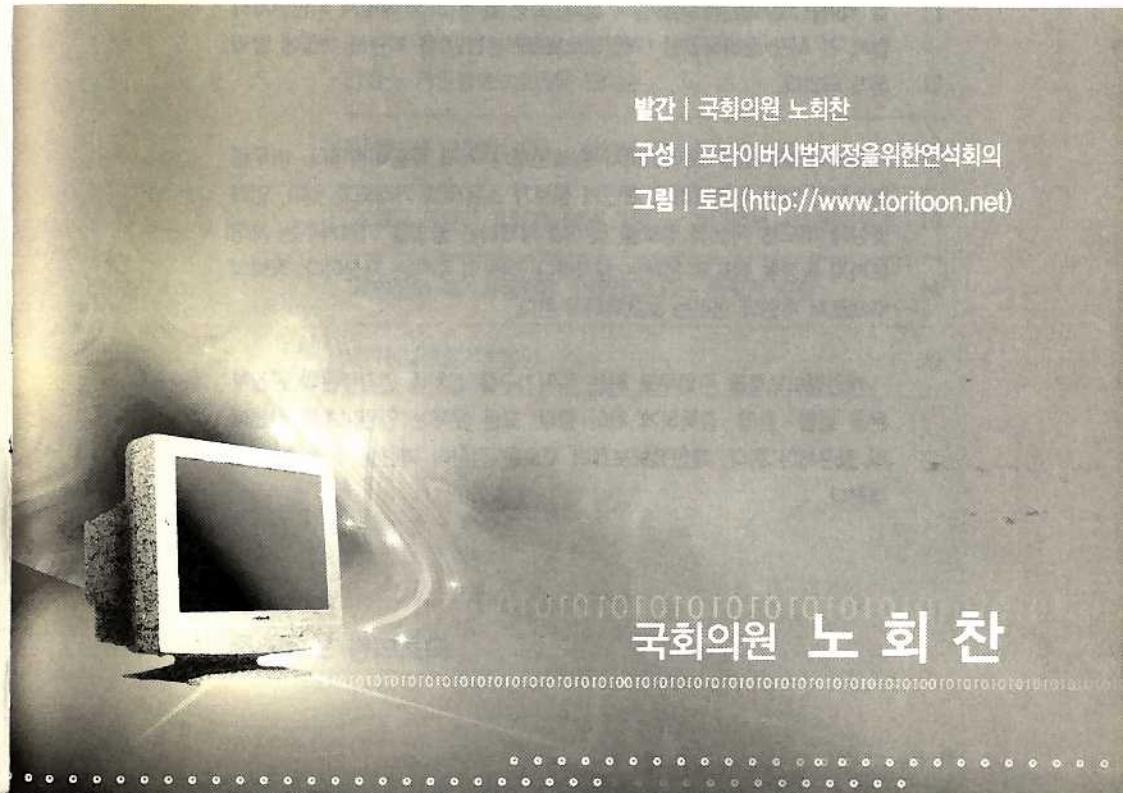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발간 | 국회의원 노회찬

구성 |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설회의

그림 | 토리 (<http://www.toritoon.net>)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으로

정보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되길 희망하며…

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개인정보침해 현상은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국감기간 밝혀진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이고 인권이다.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내 인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벗겨지고 왜곡되어도 괜찮다는 각서쓰기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음의 다름 아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법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긴 시간 준비해왔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지난해 11월에 발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거의 무방비상태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개인의 정보가 소유되고 거래되고 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신의 정보를 찾아내 삭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정보의 주체는 자신이다.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주업무로 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전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 CONTENTS

빅브라더 vs 개인정보보호법	6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8
“내 정보, 이젠 내가 지킨다” – 강화된 정보주체의 권리	11
만화 –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13
“은행만큼 안전합니다” – 철저해지는 개인정보 관리	17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젠 그만” –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18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권입니다” – 확실한 처벌	19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20



빅브라더 vs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부터, 학교와 직장, 백화점과 동네 비디오대여점까지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감시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이나 CCTV는 이제 신기술이라기에는 너무나 대중화되었고, 유전자 DB와 RFID(전자태그) 같은 위험천만한 기술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어야 할 정부 각 기관들도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에 여념이 없습니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왔던 선진국들도 정보화 시대의 발전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를 업그레이드하는 마당에, 뒤늦은 기본법이라도 잘 갖추지 못한다면 빅브라더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데이터뉴스 2004. 10. 15)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2000년 2035건에서 2001년 1만164건, 2002년 1만7956건, 2003년 2만1585건, 2004년 7월 현재 1만401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8058건(2003년)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2491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1279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1195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불법 스팸메일 대응센터에 신고된 상담 신고건수는 지난 2002년 10만6067건에서 2003년 28만2383건, 2004년 7월 현재 26만9730건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다.

2004년 국감기간 밝혀진 각종 개인정보 사건 일지

- ▲ 10월 7일 : 개인정보 1천7백여명분 빼내 불법복제 업자에게 넘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적발
- ▲ 10월 7일 : 한나라당 안명우 의원, 건강보험공단이 총 12만건의 개인급여내역 정보 무단 제공 사실 폭로
- ▲ 10월 7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 ▲ 10월 11일 : 학습지 방문판매직원, 수천명의 가입자 정보 유출
- ▲ 10월 11일 :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 이동통신사들의 1,170만명 해지자 정보 무단 보유 사실 폭로
- ▲ 10월 13일 : 1천여개의 위조 주민증으로 휴대폰 구입 후 밀수출한 사기단 적발
- ▲ 10월 14일 : 전직 생명보험사원, 고액 보험가입자 정보 빼내 사기에 이용
- ▲ 10월 14일 :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KTF와 SK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알고도 방지했음을 지적
- ▲ 10월 14일 : KTF 전 직원 포함된 15명, 637만명 개인정보 거래 적발
- ▲ 10월 19일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검찰 계좌추적 남발 지적
- ▲ 10월 19일 : 세계일보, 43개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고발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는 해당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담당했습니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주무 부처이자 경찰청의 상급 부처이며, 주민등록정보를 비롯하여 중요하고도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최대의 개인정보 수집자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정보통신 산업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고유의 임무로 자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처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 관심밖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5년간 단 1차례 열어 (프레시안 2003. 8. 6)

참여연대는 5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3차례 회의를 열었고, 그나마 그중 2차례는 서면심의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운영세칙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편법적으로 진행된 2차례를 빼면, 사실상 5년 동안 회의를 1차례 열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부는 인정 못한다?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 아니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 유감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보도자료 2004. 1. 14.)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14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폐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 게다가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총 28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중에서 5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기로 함으로써 그간의 해지자 개인정보 보유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자인했는데도 오히려 분쟁위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해온 정부 산하 기관들은 조사권이나 분쟁조정권, 정책권고권을 가지고 있어도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권한은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권리가 됩니다.

○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전담기구에 개인정보 보호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1997년에 제정된 EU 개인정보보호칙령에서 조사권, 조정권, 제소권 및 의견개진권을 갖는 독립 감독기구의 설립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만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가 설치됩니다. 이 기구는 국가 권력이나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어떠한 다른 고려도 없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구에 실효성을 보장하는 여러 조치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구의 침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전담기구가 분쟁조정에서 내린 결정은 1개월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전담기구로부터 정책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설회의 보도자료 2004. 12. 10)

정부부처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교육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야 수용되었다. CCTV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의 권한과 기구를 온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국외 감독기구의 기능과 권한〉

국가	기관명	구성현황	주요기능
영국	정보감독관	• 감독관 1인 • 사무국 약 200여명	• 사전합의권고 • 개인정보처리 등록 • 개인정보자침 제정 • 감독 및 행정규제 • 법원에 이첩
독일	연방정보 보호감독관	• 감독관 1인 • 사무국	• 연방공공기관 감독 • 고충처리 • 정보처리자 등록, 관리 • 의회 및 정부에 대한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
캐나다	연방프라이버시 감독관	• 감독관 1인 • 사무국 약 108명	• 피해구제(합의권고) • 가이드라인 제정 • 조사감독 및 행정규제
호주	연방프라이버시 감독관	• 감독관 1인 • 사무국 약 40여명	• 피해구제(조정, 결정) • 가이드라인 제정 • 조사감독 및 행정규제 • 프라이버시규약 승인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총 6인으로 구성 • 자문위원 5인 • 프라이버시 감독관	• 프라이버시 관련문제에 대해 감독관에게 자문 • 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제정시 조언
프랑스	국가정보 자유위원회	• 위원회(총 17인) 6인(국회의원) 6인(전·현직 법관) 1인(국민의회 의장 임명) 1인(상원의장 임명) 3인(국무회의 임명) • 사무국 약 80여명	• 피해구제(합의권고) • 개인정보처리자 등록 • 개인정보 세부자침 및 실행규약 제정 • 법규준수여부 감독 • 개인정보보호 자문 및 권고
스페인	개인정보 보호원	• 기관 및 기관장 • 자문위원회(총 9인) 2인(국회의원) 2인(행정기관) 2인(왕립역사아카데미 및 대학협회 추천) 2인(민간정보처리자 및 소비자 대표) 1인(민간개인정보보호협회)	• 개인정보처리 등록 • 법규준수 조사, 감독 • 고충처리 • 시정명령, 벌금부과 등 행정적 규제 • 정보 제공 • 정보의 국제이전 감시 및 허가

이창범, 「현행 프라이버시 보호 담당 기구별 성과와 한계 분석」,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제2회 자료집(2003. 8. 21) 중 일부 인용

“내 정보, 이젠 내가 지킨다” – 강화된 정보주체의 권리

○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은 개인정보의 진짜 주인인 일반 시민들에게는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선언적으로 부여했을 뿐, 이러한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장할 구체적인 조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제로 보장받을 다양한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 개인정보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는 작은 반면 한 번에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정작 피해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웁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슈 제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적용됩니다. 소송에 대한 개인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므로, 손해배상받을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은 가입은커녕 한 번 방문조차 해본 적도 없는 기관이나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알고 연락이 올 때마다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건 왜 묻느냐며 화내는 경우도 겪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경위는 개인들이 자기 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 일반 시민들은 수집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며, 개인정보 수집자들은 이 요구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 정식 재판을 밟는 것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설령 어떻게 재판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미 침해가 발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대안적 분쟁조정(ADR) 제도의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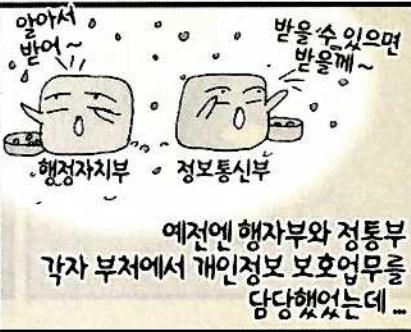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쟁은 조정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정정·삭제를 청구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를 개인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거부하면, 재판이나 행정심판을 치르느라 오랜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만일 재판 기간 동안 이미 유출이나 오용이 일어나면 승소더라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을 중단하고 요청할 수 있는 이용중지청구권이 일반 시민들에게 주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은행만큼 안전합니다” – 철저해지는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개인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수많은 개인정보가 올바로 관리·보호하고 있는지를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누가 수집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개인정보 전담기구에 등록하게 됩니다.

○ 전담기구에 등록한 곳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불만처리 창구일 뿐 별다른 권한이 없었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1년에 한 차례 소속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율규제와 국가감독이 조화된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 전자정부법을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권장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매칭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 적어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매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상호 합의하고 그 내용을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매칭 건수와 내용, 오류 발생 정도, 비용 등 세부 사항을 정기적으로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젠 그만” –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일정에 쫓기는 바람에 충분한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NEIS입니다. 대다수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구축된 NEIS는, 결국 시스템 개시 직전에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초 시행 예정 시기를 2년이나 넘기고도 아직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포탈 사이트가 패밀리 사이트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축박한 일정을 이유로 보안 테스트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의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기본법이 제정되면, 특히 민감하거나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정보 수집자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에서는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정보화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선진국들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기존 영향평가 제도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평가자가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매우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 같은 추상적 문구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정보주체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평가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이 의견들에 대해 평가자가 답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쌍방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권입니다” – 확실한 처벌

○ 현 법제 하에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더라도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악간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훔쳐 얻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너무 낮다 보니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유혹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정정, 삭제 청구에 대한 불응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처리·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당사자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정보주체가 사망인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주체의 상속인을 의미한다.
5.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생성·수집·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삭제 및 출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7. "결합"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상의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개인정보 보호원칙

제 4 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장에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장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등)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언론·출판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4.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침해위험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생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한 경우에는 사후에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당해 정보주체

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는 일월 때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③ 상품이나 역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상품이나 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④ 상품이나 역무의 제공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개인정보의 이용자는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간신 등) 개인정보는 수집한 최근의 것으로 간신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기 전에 그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 10 조 (동의의 철회)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자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자가 법률상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4. 개인정보 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현황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정보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료 또는 정정을 요구한 때에는 자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유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열람제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열람이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제 13 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유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개인정보 누설금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고유식별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개인



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식별자(이하 “고유식별자”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공공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자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처리의 목적이 고유식별자가 부여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부여한 고유식별자를 그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자로 부여할 수 있다.

제 16 조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익명처리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 3 장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무

제 17 조 (아동의 보호) ①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는 그 아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제1항의 규정과 다른 연령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개인정보 보유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 개인정보 보유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개인정보 보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4.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과 개인정보의 이전에 반대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유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 4 장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제 20 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정보주체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서류에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장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제한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2.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유목적 및 근거법률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7.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 예정 시기
8.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별로 등록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 1회 일간지 및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상의 중대한 비밀로서 이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유 여부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나 외교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 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부터 개인정보의 현황과 시스템, 개인정보의 속성과 수집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1.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이 법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감독
2.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유·사용·처리 및 보관하는지에 대한 감독
3.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교육

제 22 조 (정기감사)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매 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정기감사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수집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제 6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제 26 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청구)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이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당해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 제 27 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한 조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이



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중단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 28 조 (손해배상) 개인정보보유자가 이 법률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유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29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 ① 개인정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들이(이하 "공동피해자"라 한다)를 위하여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의 선임)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31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①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의 기재사항)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공동피해자의 범위

제 33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공동피해자의 범위
5.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제 34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사실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소장 및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공동피해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은 그의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와 대표당사자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공동피해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제 35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공동피해자에게 공통될 것
2.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이 공동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제 36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허가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 37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의 경향)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수개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수개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관계법원이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 피해자등 또는 대표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제 38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 ① 법원은 제35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정으로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 ②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공동피해자의 범위

5. 주문

6. 결정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동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 39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불허가결정) ① 법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신청이 제35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타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40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자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공동피해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공동피해자에 전원에 대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7.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계속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



다는 사실

8.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9.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41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 조 (공동피해자의 대표당사자 선임)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계속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 43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당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 44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 45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중단) ①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된 소송절차는 공동피해자의 구성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 선임된 대표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된 후 1년 이내에 대표당사자선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 46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47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추가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된 소송절차는 대표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 선임된 소송대리인 이 수계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1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 48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공동피해자의 범위의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동피해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 피해자들의 구성원이 되는 자 및 공동피해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49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소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시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제 50 조 (공동피해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피해자의 구성원과 대표당사를 신문할 수 있다.

제 51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문서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2.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제출을 거부하도록 된 문서

③ 대표당사자 및 피고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2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 53 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 54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55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취하·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 ①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56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공동피해자의 범위

② 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급의 유예와 분할지급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57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기판권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제 58 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상소취하·상소권포기의 제한) ① 제55조의 규정은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공동피해자의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59 조 (대법원규칙)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제 60 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 61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인의 개인정보보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62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과 관련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 63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제 64 조 (위원장의 신분보장)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 65 조 (위원회의 결의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 66 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67 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8 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진정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9 조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0 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소속 직원중 5급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71 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협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2 조 (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지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3 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제 74 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의 제정
- 3.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3장 개인정보보호 기관의 업무

4.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연구 지원
5. 개인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개인정보보호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8. 국제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기구와의 교류·협력 활동
9. 개인정보보호의 융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10.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11.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시행과 연구
12.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기타 개인정보보호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5 조 (국가기관의 협의의무 등)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향상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6 조 (규정의 제정) 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관업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이나 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

제 77 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자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8 조 (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79 조 (정책 및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 및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 80 조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개인정보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개인정보보호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개인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81 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2 조 (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개인정보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

제 83 조 (진정 및 조사 등) ① 이 법에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의해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84 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자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5 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기 전에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미리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③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개인정보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심이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 및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증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6 조 (질문·검사권) ① 위원회는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일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85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이를 경우에 준용한다.

제 87 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시자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88 조 (진정의 각화와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이 무기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행하여진 경우

2.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89 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 90 조 (결정)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진정인의 진정에 따라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삭제·수정, 이용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 91 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첨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개인정보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첨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2 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89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결정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93 조 (긴급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개인정보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자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 94 조 (불이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진술·증언 및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또는 징계나 그 밖에 신분 및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제 95 조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실시) ①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2.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또는 연동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는 신청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보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가 정보처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2항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시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향평가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자의 신청이 없다라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령·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3.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2.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3.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4.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5.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영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처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 96 조 (평가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향평가의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및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된 사항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4. 정보주체의 윤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5. 사회에 끼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7 조 (의견 수렴) ① 위원회 또는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제출된 의견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종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 98 조 (평가 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시정 혹은 정보처리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유자는 제3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정보처리의 중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유자가 공무원일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9 조 (국가 예산편성과 영향평가) ① 각 종양행정기관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때 제96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포함된 경우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한 예산요구서를 심의할 수 없다.

제 9 장 보칙

제 100 조 (자격사정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1 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증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2 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103 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4 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벌칙

제 105 조 (벌칙)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자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제 106조 (자격사칭)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07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0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83조제2항, 제85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자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 10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 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에서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보호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개인정보보호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내지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④ (폐지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